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98 발의연월일: 2024. 12. 9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조계원 • 허 영

정동영 · 신영대 · 강준현

한병도 · 박희승 · 박민규

문대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한민국 헌법」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 그런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.

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가 된 공무원이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 반(反)하는 행위임. 특히,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탄핵심판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된 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가운데 '파면・해임・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'와 유사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파면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,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3조의5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5(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대우) ① 「헌법재판소법」 제50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고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7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3조의5(탄핵소추 의결을 받은
	공무원의 대우) ① 「헌법재판
	소법」 제50조에 따라 탄핵소
	추의 의결을 받고 권한 행사가
	정지된 공무원은 제73조의3제1
	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직위해
	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.
	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공무
	원의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
	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
	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여 지급
	한다.